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감사담당관	1

( 2014. 4. 2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이진표 ]**

## **1. 안 건 명**

- 가.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  - 감사담당관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11일
- 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- 가. 2014년 4월 16일
- 나. 의안번호 : 14-38

## **4. 관련근거**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

## [검토보고]

#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[감사담당관]

-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옴부즈만 운영비 1건으로 총 1,340만원이 편성되었음.

### <세부 증액내용>

- 세부 내역으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960만원,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, 업무추진비 260만원으로 모두 신규 편성 되었음

### **산출내역**

- 운영수당 : 10만원×3명×8회×4월 = 960만원
- 사무용품 구입 : 30만원×4월 = 120만원
- 업무추진비 : 65만원×4월 = 260만원

### [검토의견]

- 옴부즈만 운영으로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의 조사 및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감사·평가를 실시하여 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행정 구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,
- 신규사업인 만큼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12조 제4항 - 고충민원의 접수(구민 30명 이상)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, 제21조 (청렴계약 감시·평가 대상) - 감시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(청렴계약 감시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의 범위)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제24조(운영지원) - 인력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한 후, 조속한 시일내 규칙을 제정하여 옴부즈만 운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[감사담당관]

## 1. 예산 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당초 예산액	최종 예산액 (간주처리 포함)	추경재원 증(△)감	추경후 예산액	비고
합 계	432,264,798	434,488,197	2,942,271	437,430,468	

## 2. 감사담당관 예산 현황

### 가) 부서 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액		증감	
	예산액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증감	증감률
감사담당관	233,656	0.06%	220,256	0.06%	13,400	6.08%

### 나) 세출 예산 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
감사담당관	옴부즈만 운영	13,400	0	13,400